

의안번호	제786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6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이옥규,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도시 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북형 도시근로자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충북형 도시근로자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참여시간 및 선정 (안 제4조~제5조)
- 충북형 도시근로자 인력지원 대상 (안 제6조)
- 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7조)
- 참여자 및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안 제8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안 제9조)
- 사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1.
- 협 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충북형 도시근로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

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형 도시근로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활동 참여시간) ① 참여자 근로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근로활동 참여시간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활동 참여시간 연장 등 참여시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중복형 도시근로자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적경제기업
4. 소상공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사업 업종,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근로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
3.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홍보물 제작·구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군수 등은 기업 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근로활동 참여 여부와 기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참여자에게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기업 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며.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

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

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희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고금리 장기화,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지속되는 비용 부담, 매출 회복 지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2. 비용 발생 요인

- 인건비의 일부분(최저임금 40%),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조례안 제7조)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인력지원 대상 등)
- 조례안 제7조(사업지원)
- 조례안 제8조(인건비 보조 등)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소요예산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37억원(도비 52, 시군비 85)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세 입						
세 출	13,674	2,783	3,559	3,630	3,702	
인건비, 교통비 등	13,674	2,783	3,559	3,630	3,702	
재원 조달						
도비	소 계	5,192	835	1,424	1,452	1,481
	보조금	5,192	835	1,424	1,452	1,481
시군비	소 계	8,482	1,948	2,135	2,178	2,221
	보조금	8,482	1,948	2,135	2,178	2,221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추계 결과 : 13,674백만원(도비 5,192, 시군비 8,482)

- '24년 : 연인원 10만명 / 2,783백만원(도비 835, 시군비 1,948)
- '25년 : 연인원 10만명 / 3,559백만원(도비 1,424, 시군비 2,135)
- '26년 : 연인원 10만명 / 3,630백만원(도비 1,452, 시군비 2,178)
- '27년 : 연인원 10만명 / 3,702백만원(도비 1,481, 시군비 2,221)

* 인건비(년도별 최저시급의 40%), 교통비 10천원, 3개월 만근시 근속인센티브 200천원 등